
「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」 추천 요령

2024. 11



중소벤처기업부

목 차

1. 목	적	1
2. 시	상	1
3. 포상훈격 및 포상부문	1
4. 추천(신청)방법	2
5.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	2
6. 추천(신청)기간	2
7. 추천기관	2
8. 문 의 처	2
9. 추천대상 및 평가기준	3
10.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	5
11. 제출서류	8
12. 제출서류 작성요령	13
13. 제 출 처	13

[#서식 1] : 추천대상자 일반현황(전 부문 공통)

[#서식 2] : 공적조서(전 부문 공통)

[#서식 3-1] : 공적내용[모범중소기업인(제조)]

[#서식 3-2] : 공적내용[모범중소기업인(유통·서비스)]

[#서식 3-3] : 공적내용(모범근로자)

[#서식 3-4] : 공적내용(중소기업 육성공로자)

[#서식 3-5] : 공적내용(지원우수단체)

[#서식 4] :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(전 부문 공통)

1. 목 적

- 매년 '중소기업주간'(5월 셋째주)에 개최하는「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」에서 중소기업 육성·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, 모범 근로자,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, 지원우수단체를 선정·포상
-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의 사기를 고취하고, 발전 모델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

2. 시 상

- 일 시(예정) :「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」*2025년 5월 셋째 주
- 장 소 : 미정

3. 포상훈격 및 포상부문

구 분	종 류	제포상 제한 *추천예정일(2025. 4. 12 기준)	포상 부문
정부 포상	금탑산업훈장	최근 7년 내 정부포상* 받은 자 포상 제외	○ 모범 중소기업인 (제조, 유통·서비스) ○ 모범 근로자 ○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○ 지원우수단체
	은탑산업훈장		
	동탑산업훈장		
	철탑산업훈장		
	석탑산업훈장		
	산업포장	최근 5년 내 정부포상 받은 자 포상 제외	
	대통령표창	최근 3년 내 정부포상 받은 자 포상 제외	
	국무총리표창		
기관 표창	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	각 기관 내부 포상지침 상 포상제한 대상자 포상 제외	
	기획재정부장관 표창		
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		
	국방부장관 표창		
	고용노동부장관 표창		
	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		
	교육부장관 표창		
	조달청장 표창		
	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		

* 정부포상 : 산업훈장, 산업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

※ 포상규모(인원)는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므로, 변동될 수 있음

4. 추천(신청) 방법

- 추천기관의 추천 및 개별기업(기관) 자체 추천 가능

5.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

-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 추천대상자 결정

6. 추천(신청) 기간

- 신청기간 : 2024. 11. 08.(금) ~ 12. 13.(금)

7. 추천기관

* 추천기관에 따른 가점 無

- 중소기업부(지방중소벤처기업청) 및 지방자치단체
- 중소기업협동조합(연합회, 전국조합, 지방조합, 사업조합)
- 중소기업 유관기관, 금융기관, 중소기업 관련 직능별 단체
- 중소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
- 중소기업중앙회 및 각 지역본부, 개별 중소기업 등

* 추천기관을 통하지 않고 기업(기관) 자체 추천 가능

8. 문의처

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☎ 02-2124-3362 / 이메일 posang@kbiz.or.kr

서울지역본부	02-2124-4387	경기지역본부	031-254-4836
인천지역본부	032-437-8705	경기북부지역본부	031-851-0164
부산울산지역본부	051-861-9360	강원지역본부	033-241-0010
대구지역본부	053-524-2110	충북지역본부	043-236-7080
광주전남지역본부	062-955-9966	전북지역본부	063-214-6606
대전세종지역본부	042-864-0901	경남지역본부	055-281-2301
충남지역본부	041-622-3823	경북지역본부	054-654-2225
제주지역본부	064-752-8576		

9. 추천대상 및 평가기준

가-1. [모범 중소기업인] “제조” 부문

- (신청자격)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대표자(前대표자 포함)로서 **5년 이상** 기업을 경영한 자
 - * 前 대표자는 現 등기임원인 경우에 한함
 - * 창업기업 및 가업승계기업 대표자는 2년 이상인 자
- (평가기준) 국가발전 기여도, 매출, 기술개발 실적 등 정성·정량 평가
 - * (정성) 국가발전 기여도, 국민생활 향상도, 창조적 기여도, 근로환경 개선 및 노사화합 (정량) 수공기간, 매출, 기술개발, 시설투자, 기업 간 협업, 사회공헌 활동, 고용기여, 수출 기여, 수익성, 안정성

가-2. [모범 중소기업인] “유통·서비스” 부문

- (신청자격)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대표자(前대표자 포함)로서 **2년 이상** 기업을 경영한 자
 - * 前 대표자는 現 등기임원인 경우에 한함
- (평가기준) 국가발전 기여도, 매출, 고용실적 등 정성·정량 평가
 - * (정성) 국가발전 기여도, 국민생활 향상도, 창조적 기여도, 근로환경 및 노사화합 (정량) 수공기간, 매출, 기업 간 협업, 사회공헌 활동, 고용기여, 수익성, 안정성

나. [모범 근로자] 부문

- (신청자격)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근로자(임원 포함)로서 **현 재직회사에서 3년 이상** 근무한 자
 - * 근무경력은 현 재직회사를 비롯하여 타 중소기업의 경력도 합산 가능
- (평가기준) 직무수행 능력, 수공기간 등 정성·정량 평가
 - * (정성) 직무수행능력, 기술개발·생산성 향상 및 판로확대 노력,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노사화합 기여도, 교육훈련 및 직무관련 자격취득 등 자기계발 (정량) 수공기간, 사회공헌실적

다. [중소기업 육성공로자] 부문

- (신청자격)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지원기관·학계·연구기관·대기업 등의 임직원 등으로서 해당 기관(기업)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 - * 근무경력은 현 재직기관(기업) 외 중소기업 육성지원연구 관련 기관(기업)의 경력 합산 가능
- (평가기준) 직무수행능력, 수공기간 등 정성·정량 평가
 - * (정성) 직무수행능력,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, 대외활동, 자기계발
 - (정량) 수공기간, 사회공헌실적

라. [지원 우수단체(기관)] 부문

- (신청자격)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·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기관,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단체(기관)
- (평가기준)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, 설립 운영기간 등 정성·정량 평가
 - * (정성) 직무수행능력,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, 대외활동, 자기계발
 - (정량) 수공기간, 사회공헌실적

※ 기관표창 우대사항(정부포상 및 아래에 기재되지 않은 기관표창에는 미적용)

* 공적내용 기타사항에 관련내용 제출 必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: 과학, 정보통신, 4차 산업혁명 등 관련 실적 등
- 국방부 : 전역 장병 채용 실적 등
- 고용노동부 : 일자리 창출, 일자리 환경 개선 실적 등
- 교육부 : 직업계(실업계) 학교 졸업생 채용 실적 등
- 농림축산식품부 : 농축산물(수산물 제외) 관련 중소기업
- 조달청 : 공공조달 실적 등

10.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

가. 포상기준

○ 수공기간

-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(국무총리 이상)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
○ 중복 수여의 금지 등

-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
-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,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함

○ 재포상 금지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
* 기존 정부 포상을 받은 수여일(가장 최근)에서 추천 예정일(25.4.12) 까지의 기간이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

○ 포상의 제한
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각 정부부처의 내부 포상지침 상,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자

나. 추천제한

*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형사처분
 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「상훈법」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자 또는 단체(기관)
 - 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
 - ‘임원’이라 함은 대표이사,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
 - *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- 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 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 - 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 - 다만,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3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 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
 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 - * 포상 수상 이후

11. 제출서류

< 접수 유의사항 >

[①(이메일 제출) 또는 ②(우편이나 방문) 중 택 1하여 제출]

① (이메일 제출) 작성자료 및 관련서류의 한글(hwp)파일(작성자료) 및 스캔파일(pdf) 두 종류 파일 모두 이메일(posang@kbiz.or.kr) 제출

* 문서 파일명 메일 제목 예시 : 모범중소기업인(제조) - 대표자성명(업체명).hwp

** 이메일 제출 후 접수 확인 전화 필수

② (우편 또는 방문) 작성자료 및 관련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

※우편·방문 접수의 경우에도, 작성자료(일반현황·공적조서·내용)인 한글(hwp)파일을 이메일(posang@kbiz.or.kr)로 별도 제출해야 접수 완료 처리

가. [모범 중소기업인] “제조” / “유통서비스” 부문

① 작성자료

-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(서식 1)
- 공적조서 1부(서식 2)
- 공적내용 1부(제조분야 서식 3-1, 유통·서비스분야 서식 3-2)
- 공적심사서 1부(서식 4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(서식 5)

② 증빙자료

- 최근 2년간(2022, 2023) 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홈택스 출력분에 한함) 각 1부
※ 원가명세서 포함 제출

·발급방법 : 국세청홈택스(hometax.go.kr) →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발급신청 → 표준재무제표증명 ※국번없이 126

-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
·발급방법 : 국세청홈택스(hometax.go.kr) →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발급신청 → 사업자등록증명원 ※국번없이 126

-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(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함)

·발급방법 : 국세청홈택스(hometax.go.kr) →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발급신청 → 폐업사실증명원 ※국번없이 126

○ 2023년 12월 및 2024년 9월(미발행 시 8월분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

- 반기신고의 경우 2023년 12월, 2024년 6월 신고서 제출
- 지점 소재지(사업장) 별도 신고업체는 본점 소재지 신고서와 함께 모두 제출 ※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지점에 한함

·발급방법 :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→ My 홈택스(좌측상단) → [신고] - [목록조회] → 원천세 ※국번없이 126

○ 경력증명서 1부 ※ 대표, 임원, 직원(가업승계 2세대 대표에 한함) 재임기간 합산

- 직급별(대표/임원/직원) 근무기간(연/월/일) 포함된 경력증명서
- 회사 직인 날인 必
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가업승계기업인 경우에 한함)

·발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(nhis.or.kr) →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※국번없이 1577-1000

○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사본 1부(법인인 경우에 한함)

·발급방법 :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→ 법인등기 → 발급하기 ※국번없이 1544-0770

○ 중소기업확인서 1부

·발급방법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의 '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'(상단 메뉴) 참조

○ 추천(신청) 대상자가 과거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훈장, 포장, 표창 및 감사장 사본 각 1부

○ 2023년도 수출실적증빙자료(제조업에 한함, 수출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)

- (직접수출)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실적확인서

·발급방법 :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(bandtrass.or.kr) ※02-2140-0740
한국무역협회(kita.net) 무역지원서비스 ※1566-5114

- (간접수출) 은행 또는 KTNET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

-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
 - 고용 촉진 및 유지 관련 중앙 정부 인증·실적 서류
 - ※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(중기부),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서(고용부), 가족친화인증서(여가부),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(복지부), 내일채움공제(가입증서 및 인력 가입내역) 등
 - 특허·인증 관련 서류
 - ※ 특허 등은 출원 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
 - 최근 2년(23·24년) 사회공헌 관련 기부금영수증
 - ※ 지정기부금단체(종교단체지정기부금 제외)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서류만 인정
 - ESG경영 관련 서류
 - ※ 사내 환경경영 규정, 사내 직원복지규정,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
- 복수기업을 운영하는 경우, 위 증빙자료 중 대표기업 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, 표준재무재표증명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수출실적증빙자료, 사회공헌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

나. [모범 근로자] 부문

① 작성자료

-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(서식 1)
- 공적조서 1부(서식 2)
- 공적내용 1부(서식 3-3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(서식 5)

② 증빙자료

-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
·발급방법 : 국세청홈택스(hometax.go.kr) →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발급신청 → 사업자등록증명원 ※국번없이 126

- 재직증명서 1부
 - 타 중소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, 해당 중소기업 경력증명서(직급, 근무기간 등 표기) 1부

- 추천(신청) 대상자가 과거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훈장, 포장, 표창 및 감사장 사본 각 1부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·발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(nhis.or.kr) → 자격득실확인서 발급
 ※국번없이 1577-1000

-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
 - 업무 관련 자격증은 7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해 심사에 반영
 - 최근 2년(23·24년) 사회공헌 관련 기부금영수증
- ※ 지정기부금단체(종교단체지정기부금 제외)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서류만 인정

다. [중소기업 육성공로자] 부문

① 작성자료

-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(서식 1)
- 공적조서 1부(서식 2)
- 공적내용 1부(서식 3-4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(서식 5)

② 증빙자료

-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
·발급방법 : 국세청홈택스(hometax.go.kr) →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발급신청 → 사업자등록증명원 ※국번없이 126

- 재직증명서 1부
 - 타 기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(직급, 근무기간 등 표기) 1부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·발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(nhis.or.kr) → 자격득실확인서 발급
 ※국번없이 1577-1000

- **최근 2년(23·24년) 사회공헌 관련 기부금영수증**
 ※ 지정기부금단체(종교단체지정기부금 제외)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서류만 인정
- 공무원 및 중앙행정기관 근무자 신청 불가

라. [지원 우수단체] 부문

① 작성자료

-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(서식 1)
- 공적조서 1부(서식 2)
- 공적내용 1부(서식 3-5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(서식 5)

② 증빙자료

-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

·발급방법 : 국세청홈택스(hometax.go.kr) →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발급신청 → 사업자등록증명원 ※국번없이 126
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1부
 - **최근 2년(23·24년) 사회공헌 관련 기부금영수증**
 ※ 지정기부금단체(종교단체지정기부금 제외)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서류만 인정

12. 제출서류 작성요령

가. 주요사항

- 작성자료는 휴먼명조체 11포인트로 작성
- 사진 반드시 첨부
- 전문용어의 영어표기 시 풀네임 및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재
 - * (예시) CSR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, 기업의 사회적 책임)
-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중복확인하여 정확히 기재
- 공적조서의 과거포상 실적을 반드시 기재
 - 포상훈격, 수상연월일 및 포상부문을 정확히 기재
 - * 훈·포장을 수상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작성(중복수여·재포상 제한 등 확인용)

나. 기타 사항

- 수공기간, 재포상금지 기간 등의 산정기준일 : 2025. 4. 12(추천예정일)
 - ※ (예시) 2017. 4. 11 ~ 2025. 4. 12 수공기간 8년으로 산정
-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(쪽번호 미기재)하여 제출
-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관련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한 후 포상 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
-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,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

13. 제출처

※ 주요 중소기업 단체를 통해서도 신청·접수 가능

접수기관	접수처		문의전화
	이메일	우편·방문	
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	ymkim0318@korea.kr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1동, 지역정책과	02-2110 -6305
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	sea1003@korea.kr	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8, 지역정책과	051-601 -5105
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	imrelief@korea.kr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침단로 122-11, 본관 2층 지역정책과	053-659 -2262
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	treessi@korea.kr	광주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, 나라키움통합청사 2층 지역정책과	062-360 -9105
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	tngus3990@korea.kr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, 지역정책과	031-201 -6909
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	amy0726@korea.kr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82, 1층 지역정책과	032-450 -1137
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	cyn2053@korea.kr	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, 지역정책과	042-865 -6122
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	immeone@korea.kr	울산 북구 산업로 915 3층 지역정책과	052-210 -0012
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	ek1612@korea.kr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지역정책과	033-260 -1615
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	ykkhn13@korea.kr	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, 지역정책과	043-230 -5325
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	jiyun12@korea.kr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, 지역정책과	041-415 -0677
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	bari7100@korea.kr	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, 지역정책과	063-210 -6426
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	adieu0416@korea.kr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, 지역정책과	055-268 -2530

- 포상기준,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추천요령」 참조